

2005. 4.

其他案件審查報告書

- 충주도시관리계획(공원:조동근린공원)변경
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-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

產業建設委員會

나.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

1) 제안이유

- 「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」에 근거한 합리적인 소도읍 육성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상위계획의 도시개발 정책을 수용하여 계획의 유기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의 충북 최대의 쌀 생산지로서 생산 및 가공, 판매 등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의 구축하여 특성화, 전문화를 통한 주덕지역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충주시의 도·농간의 거점 소도읍으로 주덕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○ 계획의 개요

- 위 치 : 충주시 주덕읍 일원
 - 면 적 : 47.47km²(도시계획면적 2.117km²)
 - 사 업 량 : Bio농가 체험단지성 외 10건
 - 사 업 비 : 55,095백만
 - 현재 시행중인 20,586백만원 포함(주덕하수처리장, 농민문화센터)
- ※ 소도읍육성사업계획 확정시 : 총사업비중 국비 100억원 지원(4개년)
및 도·시비(50%)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

가. 충주도시관리계획(공원:조동근린공원)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

-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은 물론 그 지역의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도시계획이 그 지역의 실정에 알맞은 적정한 도시공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
- 지방의회에서 도시계획관련 안건을 심사하여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「좋다·나쁘다」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제시는 확정·결정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꼭 의회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

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도시관리계획(공원:조동근린공원)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	2005. 4. 2	2005. 4. 2	2005. 4.11	2005. 4.11	지역 개발과 장
주덕소도읍 육성 계획 동의안	"	"	"	"	"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도시관리계획(공원:조동근린공원)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

- 동량면 조동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조동근린공원은 충주시의 북측 주거지역과 인접한 자연친화적인 균린공원으로 공원구역 일부가 산복 및 임상이 양호한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 개발가용지 협소로 균린공원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변경 결정코자 함

2) 주요내용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23	조동 근린공원	근린공원	동량면 조동리 산45-1번지일원	133,890	증19,810	153,700	92.8.22 충북고 92-130호	자연 녹지

- 조동근린공원은 지난 '92년 8월 22일 충북고시 제92-130호로 지정 · 고시되어 2004년도에 8천 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(주)신라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조동근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으나
- 기존 구역만으로는 도시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어 공원 구역 변경을 선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이에 따른 충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른 것임
- 본 조동그린공원 변경 결정안은 공원의 이용성, 접근성,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인 공유지 임야 일부를 공원구역에 편입 확대하고 급경사 위주의 산복 7,8부 능선과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사유지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임
- 조동근린공원은 충주시 북쪽에 자리 잡은 자연친화적인 균린공원으로서, 충주댐과 연계되는 관광자원으로서 충주를 상징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나.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

- 충주시 주덕읍은 2001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134개 읍과 함께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· 고시된 바 있음
- 본 동의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될 시에는 4년에 걸쳐 국비 100억 원을 지원 받게 되어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됨
- 본 사업은 지역에 남아 있는 자원을 테마로 개발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하천을 비롯해 도시기반시설을 보강해 배후 농촌의 경제 · 사회 · 문화적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주덕읍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큰 사업이라 하겠음
- 다만 현재 주덕읍 주민과 충주시 그리고 충주시의회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

4. 질의.답변 요지

**가. 충주도시관리계획(공원:조동근린공원)변경 결정안에 대한
의견 제시의 건**

- “ 없 음”

나.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

- “ 없 음”

5. 심사결과

**가. 충주도시관리계획(공원:조동근린공원)변경 결정안에 대한
의견 제시의 건 : 의견서 채택**

나.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 : 원안가결

6. 불 임

**가. 충주도시관리계획(공원:조동근린공원)변경 결정에 대한
의견 제시의 건 : 의견서 1부**

나. 주덕소도읍육성계획 동의안 1부 끝.

의견서

□ 의안명 : 충주도시관리계획(공원:조동근린공원)
변경결정안

□ 심사경과

- 의안번호 : 제563호
- 상정일자 : 2005년 4월 11일
- 의결일자 : 2005년 4월 11일
-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
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

□ 의견

조동근린공원은 충주시 북쪽에 자리잡은 자연친화적인
근린공원으로, 충주댐과 연계되는 관광자원으로서 충주를
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적법한
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

2005. 4. 11

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